



「밀양시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공사」 조감도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경남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본격추진
- 각종 공사설계변경 안 통한다
- 경남건축사회 제49회 정기총회 개최
- 경남도 아파트 감사 인기 절정
- 경남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도민과 함께 푼다
- 경남도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본격 추진
- 경남진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분양 실시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1억원 신청
- 관광·산단·특화산업 등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
- 2015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교육 실시
- 도시철도 양산선 본격적인 추진
- 의령·산청·합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 지식정보 10

- 건설신기술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하세요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이내처리

-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원 투입
- 전국6개 건설현장서 "순환골재로만 건설" 시범사업
-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대수술
- 쇠퇴도시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착수
- 15.2월 전월세 거래량은 12.8만건, 전년동월 대비 11.3% 감소
- 개발제한구역, 환지·민간참여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21

■ 신기술 정보 26

■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29

■ 기술인 나눔 정보 31

경남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본격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크게 향상

-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10개 사업 및 연계·협력 프로젝트 5개 사업 선정, 총사업비 3년간 691억원 지원

경상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에 총 10개 시군에 10개 사업(총사업비 507억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2월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 5개 사업과 함께 금년 들어 총 15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먼저, 이번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은 도시지역에 ▲ 창원시 완월지구 ▲ 진주시 옥봉지구 ▲ 양산시 소남지구 3개 지구이고, 농어촌지역은 ▲ 함안군 윤외지구 ▲ 남해군 둔촌지구 ▲ 하동군 범왕지구 ▲ 산청군 화계지구 ▲ 함양군 옥계지구 ▲ 거창군 동촌지구 ▲ 합천군 권빈지구 7개 지구이다. 도시지역은 달동네 및 쪽방촌, 농어촌 지역은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남도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생활권별 주민체감형 사업추진에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들을 해소하고 인근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한방향노화산업과 관계자는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통해서 “도내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를 통해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도심 슬럼지역과 낙후된 농어촌마을의 경쟁력이 확대되어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역행복생활권 :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이웃 시·군이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15년 현재, 전국에 63개 생활권 구성, 우리도 5개 생활권)

※ 우리도 생활권 구성현황 : 5개 생활권(중추도시 2, 도농연계 1, 농어촌 2)

유 형	중심시군	연계시군	생활권 인 구
중추도시 생활권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170만명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56만명
도농연계 생활권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45만명
농어촌 생활권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14만명
	합천군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23만명

※ 광역중추도시 생활권 구성 : 양산시(부산, 울산), 김해시(부산), 합천군(대구)

⇒ 선도사업 : 구성된 생활권내 시군간 연계·협력으로 상생발전을 연계·협력 프로젝트와 도시 지역 달동네 및 쪽방촌, 농어촌지역의 낙후 및 오지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로 구성

■ 자료 : 도 한방향노화산업과 행복생활권담당 (055)211-6533

각종 공사 설계변경 안 통한다

▶ 경남도, 부정비리 온상 ‘설계변경’에 방점, 뿌리부터 제거

홍준표 도지사는 9일 오전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각종 시설공사의 부정비리는 설계변경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도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절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최근 3년간 도가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을 한 공사 전반에 대하여 조속히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감사관에게 지시하였다.

홍준표 도지사의 이와 같은 지시 배경에는 처음에는 저가로 낙찰하였다가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공사비의 2~3배를 부풀리는 관행을 앞으로는 일절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민간공사는 설계변경이 없는데 관급공사는 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느냐”면서 “각종 공사의 부정비리는 설계변경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지시한 것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 감사관실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최근 3년간 도에서 시행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부실한 설계검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급증하게 된 사례가 있는지,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 강도 높게 살펴볼 예정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관행이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뿌리부터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감사관실 기술감사팀당
(055)211-2273



경남 건축사회 제49회 정기총회 개최

경상남도 건축사회(회장 박무귀)는 3월 12일 오후 1시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도내 건축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경남건축사회는 경남도내 18개 시군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되어 도내 건축물 설계는 물론 경남도 건축행정 등 각종 시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총회 1부에서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유공 건축사 7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건축사의 권익신장 및 협회발전에 기여한 유공 건축사 14명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총기) 및 경남건축사회의 표창장 및 공로패 등을 수여하였다. 이어 2부에서 2014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 신임회장 선출 등의 순서로 행사가 진행 되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상남도 건축문화발전에 공로가 많은 유공 건축사 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 도정의 발전 및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한 건축사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아울러 축사를 통해 “지난해 지정된 사천·진주 항공산단, 밀양 나노산단,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등 3개 국가 산단개발을 착실히 준비하고 채무 감축 등 재정건전화 시책과 도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깨끗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는 경남을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4



경남도 아파트 감사, 인기 절정

- ▶ 도 상시감사 한 달간 5개 단지 추가 감사 실시
- ▶ 총 31건, 389백만원 부당 사용 적발, 고발 3, 세무서 통보 1, 징계 3

경남도는 지난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해 실시한 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이어 그동안 공동주택T/F팀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 했다.

이번 감사는 5개 단지를 실시하여 총 31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고, 주요 지적사례로는 공사 입찰담합 의혹·저가의 공사 자재로 변경 시공·공개경찰입찰 회피용 공사 쪼개기 1건, 계약이행보증금 과소 징구 3건 및 입대의·부녀회 운영비 부당집행 5건 등이고 대상 아파트 모두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욕실개선공사를 하면서 주요자재인 양변기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값싼 것을 사용하고도 개당 143천 원이 비싼 것처럼 납품된 것으로 준공처리하여 총 33,789천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어 관련공무원 3명은 징계, 1명은 훈계처리 하였다.

○ 주요지적 사례는

입찰담합 의혹이 있거나, 저가의 자재를 시공하였거나 수회에 걸쳐 공사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를 하면서 입찰내역서 일부가 동일한 3개 입찰서가 있어 이는 담합의혹이 있어 수사의뢰하였고, 당초 설계도서보다 17,742천원이나 값싼 시설을 설치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하였다. 계약과 시공 잘못 등으로 이익을 취한 8건 171백만 원은 변상 또는 환수조치토록 하고, 이 밖에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 또는 개선명령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 자료 : 도 감사관실 공동주택TF담당
(055)211-2183

경남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도민과 함께 푼다.

▶ 행정규제 개선 도민 공모로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

경남도는 기업의 투자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을 실시한다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오는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대상은 기업투자, 소상공인 육성 등에 부담을 주는 규제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 주거 및 보육, 각종 인·허가사항 등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행정규제가 포함된다.

공모제 참가를 원하는 도민은 행정규제 개선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여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net)나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중앙부처의 협의(수용 여부)와 비규제, 기 제출된 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1차 예비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 4개 심사항목을 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은 오는 12월경 실시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5명 각 50만 원, 장려 5명 각 3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도는 지난해 1,263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창원남산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이승렬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가 도민들의 삶의 현장 속 아이디어들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불합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담당
(055)211-2483



경남도,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본격 추진

- ▶ 2015년 2월 테스트플랜트 부지 확정
- ▶ 2015년 7월부터 R&D 1단계 시행 및 건축설계 실시 등 본격추진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경남도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83억원(국비 818, 지방비 185, 민자280)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 및 인프라구축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가 주관하여 추진하게 되며, R&D 사업은 전국공모 사업으로 진행된다.

경남도는 지난 2월 본 사업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테스트플랜트의 입지를 기업접근성, 기반조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진북산단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도,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로 구성된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추진단에서는 그간 도내 7개 부지에 대해 장단점 및 입지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장 용이한 진북산단 내 부지를 선정하였다.

진북산업단지 부지(10,000㎡)에 들어서게 될 테스트플랜트는 총사업비 263억원(국비 136, 지방비 127)으로 로봇개발·설계실, 로봇제작실, 로봇신뢰성·평가실 등의 연구실과 3차원 레이저측정기 등 20종의 장비가 구축될 계획이다.

테스트플랜트는 금년 7월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내년초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R&D 과제의 시공정 구현 및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전국 공모로 시행되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R&D 과제를 도내 로봇관련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 로봇기업 및 자동화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준비 중이다.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도내 기업들에게 특수제조환경 분야의 R&D 기술동향 전파 및 로봇비즈니스벨트 R&D 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본격궤도에 오르게 되면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제조환경 및 공정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로봇기술의 산업 전반 파급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기계융합산업과 로봇산업담당
(055)211-2774



경남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분양 실시

경남도는 오는 12일 경남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4부지(5필지)를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며 기존 대형필지(2필지)를 중소형필지(31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만큼 입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분양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분양을 희망하는 입주기업은 도와 진주시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4.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오는 5월11일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82%(총 11개 기관 중 9개)가 올 상반기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관기업들의 입주희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 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입주대상기업
1순위	▶이전관련산업 및 전략산업 연관업종
2순위	▶지역선도 및 전략산업 연관업종 시제품 생산기업, 지역기반산업 연관업종 시제품 생산기업 (항공우주산업, 첨단나노융합산업, 주택건설산업)
3순위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 이전기업 (연구, 생산통합시설)
4순위	▶기타업종(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이번 분양공고를 통하여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민간투자가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서부청사추진단 혁신도시팀당 (055)211-6483

경남도,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사업 38개소, 101억 원 신청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과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을 위해 38개소 대상지에 10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 환경 보전을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하여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여건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에서 한층 더 나아가 휴식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환경보전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개발제한구역 만들기 노력으로 누리길 및 경관조성, 생활 공원조성,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축 등 주민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은 300개소에 총 93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과,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에 대한 웰빙 공간으로 제공하는 누리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16개소에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누리길 4개소와 마을회관 건축과 마을 안길 포장 등 12개소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남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 및 경관조성 등 환경문화사업에 정부투자를 늘려가는 만큼 사전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2016년에 신청한 38개소 국비 101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환경문화사업의 추진으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구역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055)211-4327

○.....○ 관광·산단·특화산업 등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

▶ 경남도, 4월 27일까지 접수...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대

경남도는 도내 낙후지역 중에서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성장거점지역의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하여 오는 4월 27일까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 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규모, 파급효과, 지역생활권 거점, 민간투자 가능성 등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도는 시군의 문화 관광시설,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을 4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다.

6월경에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선도 시범지구 3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는 최소 1개 이상이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선정 되면 관광휴양시설, 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 등의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경남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에 응모 가능한 지구를 파악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서부전략산업과 지역개발담당
(055)211-6494

경남도, 2015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교육 실시

- ▶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건설현장 업무능력 향상
- ▶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경남도는 3월 25일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대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직원 및 품질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015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시설직 공무원 및 현장대리인 등 도내 건설공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청렴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 교육,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기준과 공정별 품질관리 사례, 품질시험 및 시험 성적서의 활용 등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들밀도, 아스콘 코어채취, 평판재하 시험, 차선헬도 측정 등의 현장시험을 시연하고,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과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책자도 배포한다.

정경섭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품질관리 실무교육이 도내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사 관계자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련 실무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도내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 등 전문지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자료 : 도 도로안전과 도로품질관리팀당
(055)211-4233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본격적인 추진

-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부산광역시 노포동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을 연결하는 12.51km의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 된다.

경남도는 2013년 8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5,558억 원으로 조정 등 관계기관 협의와 올해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0일 최종 승인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산선은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6년경이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2020년 준공하여 2021년이면 양산선이 개통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철도 양산선은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서 양산시 북정동까지 연장 12.51km 구간을 소요 시간 24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며,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곳으로 고무차륜의 무인운전 시스템 방식으로 건설 될 계획이다.

양산선의 사업비 5,558억 원 중 3,335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 2,223억 원은 지방비 부담이며 양산시, 부산시 등이 부담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2월 도지사 양산시 순방 시 양산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산시 부담액의 25%를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밝힌 바 있다.

양산선의 기본계획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따라 LH공사의 재정난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양산시 동면 일대의 사송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고속도로, KTX울산역, 김해공항 등의 국가교통망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 양산선이 준공, 2021년에 개통되면 2개 노선의 도시철도가 부산과 연결 운행되는 편리한 대중교통망까지 구축하게 되어 인구유입 및 기업투자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동남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도 교통정책과 공항철도담당
(055)211-4492

의령·산청·합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 기반시설 조성 시 국비 300억 원 지원 지역 활성화 기대

경남도는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이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시·군당 300억 원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지역활성화 지역’ 제도에 따라 3월 30일 경남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정했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시행)’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도는 일반적 낙후도를 반영하는 공통지표(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 인구 변화율, 인구변화율)와 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고령화율, 사업체 종사자수)로 평가하여 성장촉진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하위 30%인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을 지난 2월 25일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포괄보조금 50% 추가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신청 시에 가점(5점) 부여,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지원’ 공모 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영삼 경남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은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하여 관광지·산업단지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내 불균형을 해소하여 낙후지역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서부전략산업과 지역개발담당
(055)211-6494

건설신기술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하세요

▶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신기술 활용도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국 발주청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는 「제8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3.5(목)~3.6(금) 양일간 충남 예산에 있는 리솜 스파캐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국의 발주청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국토부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기술제도 및 정책방향’, ‘우수 활용사례 발표’ 및 다수 발주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 최근 지정되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17개 신기술의 전시회도 함께 열려, 기술개발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9년 도입한 제도로 ’14년말까지 753건을 지정하여 누계 활용실적은 4만여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8.5조원에 달한다.

○ 신기술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건설기술연구원, ’10.4월)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며, 품질은 44%, 안전성은 42% 향상됨과 아울러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기술 활용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로는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 ‘14년말 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신기술 협약업체를 양성화하여 기술을 전수받은 업체에게도 발주청과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신기술의 공사 활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5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내 처리

▶ 건축물 인허가 행정처리 단축 기대...수수료 최대 50% 감면

□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5(목) 공포하였다.

○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5.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다.

* (기존기관 4개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추가지정 2개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4.5.28 개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

○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3.12, 목)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8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 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사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올해 건설사업 정보화에 92억 원 투입

▶ 빅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등 18개 과제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빅데이터 활용 등 건설사업 정보화 18개 과제에 92억 원을 투입한다. 건설사업 정보화 정책의 로드맵인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CALS) 기본계획(2013 ~ 2017)'의 2015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 이번 계획은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엔지니어링(Eng) 업체 기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18개 과제(92억 원)가 추진되는데 주요과제로 3차원 정보모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기반 구축,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 도입,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기술정보 확충 및 건설 인허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 'BIM활용 기반구축'사업은 도로 분야 BIM표준파일 변환프로그램 개발, 성과품검사도구, 보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는데, 국토부는 '16년 하천분야까지 기반사업을 완료한 후 2020년까지 SOC건설사업 20%에 BIM을 적용할 계획이다.

○ 다음, 도로·하천 등 SOC건설공사의 작업 내역을 세분화하여 공정·공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공사관리프로그램(WBS) 개발·시범사업도 추진되는데, 디지털화된 작업관리를 통해 건설공사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빅데이터 활용방안연구 사업을 통해서도 그간 SOC건설공사를 통해 축적된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도서 및 원가절감사례 등 비정형 대용량 자료를 분석, 차후 유사 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 건설 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기술정보 확충' 사업을 통해서도 국내 건설·Eng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술 규정, 공사시방서, 시공사례 및 연구보고서 등 기술정보DB 1,300여 건이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www.codil.or.kr>)"에 확충되어 공공·민간업체 등에 제공된다.

- 특히, 국토부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Eng·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해외 계약서식, 건설지침, 설계기준, 시방서 및 시공사례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도 신규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 '건설인허가시스템 고도화'사업 부문에서는 국도 점용과 관련하여 점용 신청인이 점용료를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계산 기능'이 개발되고, 도로점용허가증도 권리의무관계의 명확한 표시를 위해 피허가자 모두가 표시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 추진으로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건설·Eng업체의 기술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8

전국 6개 건설현장서 “순환골재로만 건설” 시범사업

▶ 건설폐기물 100% 재활용...예산절감·환경보호 일거양득

□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 되던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자재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 현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가가치 용도의 사용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 건설폐기물 발생량 : 6,278만 톤('07년), 6,501만 톤('10년), 6,786만 톤('12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금년 내 준공이 가능한 전국 6개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시설물을 시공할 계획이다.

- 무엇보다도,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하여 국립공원, 캠핑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참여기관	시범사업 대상
환경부	내장산국립공원 금선교화장실
도로공사	88고속도로 순창휴게소 화장실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캠핑장 관리사무소
LH	행복도시 3-2생활권 공원 관리사무소
철도시설공단	진주-광양 복선화 구간 황천역사
대전국토관리청	청양-홍성 국도구간 표층(300m)

□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지원협회는 순환골재의 품질확인 및 현장 모니터링,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와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이나 품질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3년도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순환골재 100% 사용 '되돌림 화장실'(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분석결과, 안전 및 품질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순환골재 활용용도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천연골재 대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양호한 순환골재로 100% 대체하여 사업비 절감이 기대되며, 공사현장 주변에 다수의 순환골재 공급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골재 공급 측면에서도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골재단가(m3당) : 순환골재 6,000원, 천연골재 11,000원

□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천연골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간 4천만 톤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약 1,25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7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대수술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 운영

□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 TF 구성원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 TF는 3.20(금)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TF 운영과 병행하여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497



쇠퇴도시를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착수

▶도시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 4월 말까지 공모 후 6월경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23일(월) 인구 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 금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하여 작년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금년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하여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용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하여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 금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 특히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 또한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되며,

□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도시의 2/3*에서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 인구감소·사업체수 감소·건축물 노후도 등 3개 쇠퇴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소(65%)가 쇠퇴('14.12월)

□ 그간 뉴타운·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업은 있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어렵고 그나마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 정부도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작년 5월 13곳의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추진중이며, '17년까지 국토부는 선(先) 투자 성격의 마중물 예산으로 개소당 60억~250억원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협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총 1.2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9

'15.2월 전월세 거래량은 128만건, 전년동월대비 11.3% 감소

▶ 월세비중은 42.2%,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전월대비 1.3%p 감소

□ 국토교통부는 금년 2월 전월세 거래량(2.1~2.28)은 128,113건으로,

* 확정일자 신고분이며,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보증금 등의 월세는 통상 미신고

○ 전월대비로는 이사철 성수기 영향으로 17.0% 증가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설 연휴(2.18~20) 등의 영향으로 11.3% 감소하였으나,

* 2월 거래량(만건) : ('13) 13.6 → ('14) 14.4 → ('15)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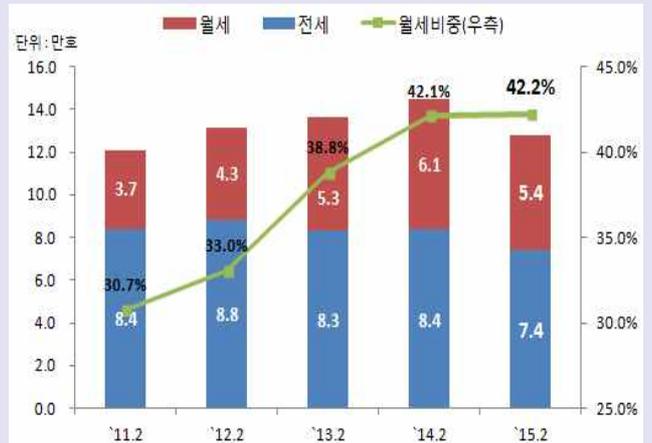
○ '15.2월 누계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금년 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보증부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로서, 전년동월대비 0.1%p 소폭증가, 전월(43.5%) 대비 1.3%p 소폭 감소

< 전월세 거래량 (전국, 만건) >



< 전월세 거래량 월세비중 (전국, %) >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2,117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하였고, 지방은 45,99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61,505건), 아파트 외 주택은 11.1% 감소(66,608건)

□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1.4% 감소하였으며, 월세는 11.2% 감소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9

개발제한구역, 한자·민간참여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 20만㎡ 미만 지역 등 규제개선...중소형 단지 건설 촉진 기대

□ 이미 해제되었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한자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

□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다.

-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 》

○ 혼용방식 개발 확대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시 한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한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하여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 허용

-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 : 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7

앞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다.

-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 → 그림 8)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c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다.

-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다.

○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번 고시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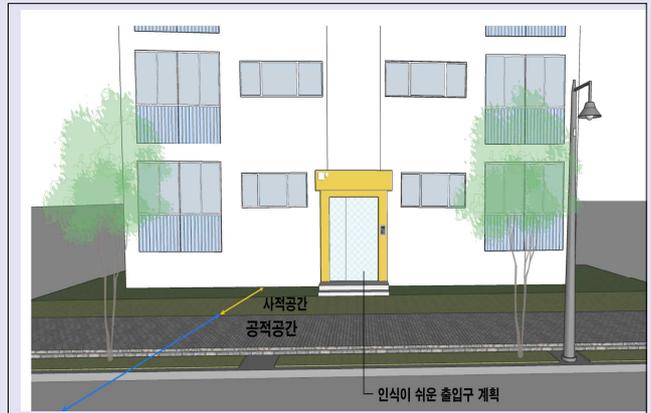
범죄예방 건축기준 활용 예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출입구 계획



투시형 담장 계획



사적·공적 공간을 구분, 인식이 쉬운 출입구 계획



비상벨을 설치한 주차장 계획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NEW STAY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특정시설용지에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포함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5년 3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분양신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안목치수를 적용 하도록 제도 도입 ('14.1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 30실 이상으로서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오피스텔
- 이에 비해 분양 미신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중심선 치수를 적용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적용되는 사례
 - 85㎡이하 기준 : 매입임대주택, 바닥난방 가능면적, 중개보수요율(저요율)
 - 주차장 면적산정(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 적용 규정) 등
- 분양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동일하게 적용(안목치수) 및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함.(제2조 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7, 4752 팩스 044-201-5574)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이용자가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CCTV가 없는 도시공원 내 안전벨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어 같은 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을 폐지한 후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가 없는 도시공원 내 안전벨 설치 기준 마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개정안 3-4-2 (13))

3. 의견제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3. 19(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부도임대주택의 원활한 매입추진을 위하여 매입대상주택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그 동안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대상주택의 기준 보완(제40조 개정)

부도발생 주택 중 임대사업자가 정당하지 못한 전세권 설정 이후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매입대상에 포함하여 현재 실거주 임차인이 입는 피해 구제하고자 함

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주택수리비 범위 명확히 보완(제43조제3항 개정)

부도임대 매입시 지자체도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주택수리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주택수리비 범위에 공용부분 수리 외에 매입주택 수리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을 위한 대피통로 기준 개정(안 제41조 단서규정 신설)

- 1) 대지 안에서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겸용, 물건 적치 등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통로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나.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61조 개정)

- 1) 거주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
- 2)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준불연재료 성능 이상 사용 대상 건축물을 6층으로 확대

다. 건축물 이격거리 규정 개정(안 별표2 개정)

- 1)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규정을 일부 제외하고 있어, 화재 시 인접 건축물로 화재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격거리 규정을 확대 적용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태영건설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선우이앤지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576호
- 보호기간 : 2015.01.15.~2020.01.14
- 기술분류 : 건축>철골>철골계단

1. 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계단참 마감판, 스트링거 프레임, 스트링거 연결재, 이동식 계단판으로 구성되며 이동식 계단판만을 양중장비 없이 좌우이동시켜 벽체 공사와 간섭없이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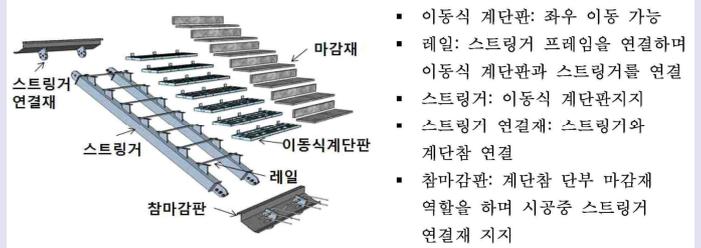
(2) 내용

이 신기술은 계단참 마감판의 단부의 스트링거 연결재와 계단지지 플레이트가 접합된 스트링거를 연결한 뒤 스트링거 상부에 레일을 결합한 후 이동식 계단판을 체결하는 조립식 계단공법으로 별도의 양중 장비 없이 이동식 계단판을 벽체 반대방향으로 이동(최대 20cm)시킴으로써 공사 완료 후 원위치하는 벽체공사에 간섭을 주지않는 계단과 벽체를 동시에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 계단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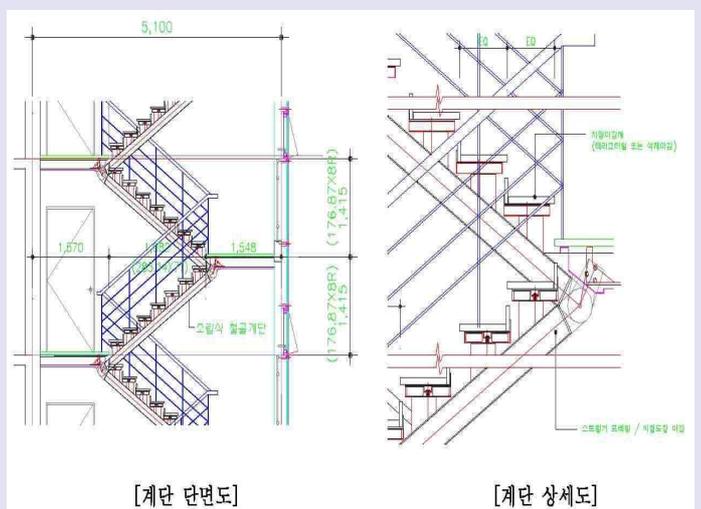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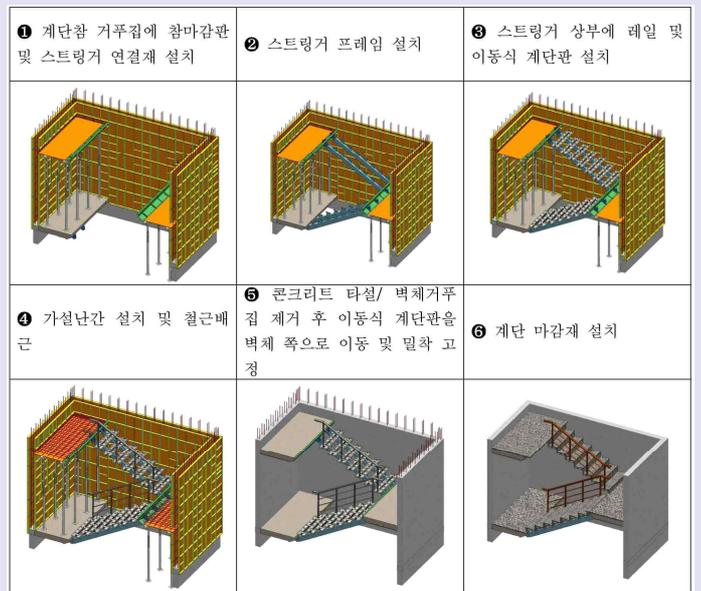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원리 및 구성요소

계단 벽체 거푸집을 시공하기 위해 계단판에 슬롯 구멍을 두어 계단판을 벽체와 이격하여 설치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벽체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벽체쪽으로 계단판을 이동하여 밀착 고정시킴으로써 벽체에 거푸집공사와의 공정간섭을 배제하고, 기존공정을 축소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 확보



(2) 시공방법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규모	공사기간	적용내용
1	국회 제2의원회관신축공사	국회 사무처	지하5층 지상10층	2010.02 ~ 2012.01	지상 비상계단 4개소
2	태영문경현장 시공계단세트장	태영건설	지상1층	2013.03 ~ 2013.10	복업계단

나. 향후 활용전망

계단참과 계단참 사이를 스크링거로 연결한 후에 그 위에 이동 가능한 계단을 놓아 시공하는 공법으로 모든 부품을 공장제작하여 운반하고, 현장에서는 중장비 없이 인력으로 쉽게 조립시공이 가능한 공법이다.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모든 계단에 적용가능한 공법으로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구조적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편리, 고품질 및 시공 향상 등이 우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향후 활용 전망이 높은 공법이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기술		신기술
구분	내용	
슬라이딩형 철골계단	경사 계단판 전체를 이동	계단판 개별 이동
	별도의 가설계단 필요	가설 및 본계단 동시 사용
	계단 설치시 중장비 사용	인력 및 경장비로 설치
재래식 거푸집 공법	벽체 거푸집 단절	일체형 벽체 거푸집 사용
	경사 계단판 철근 배근	이동식 계단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전 통행 불편	계단판 설치후 즉시 통행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아파트 층고 2.9m 1개층을 기준으로 테라조 타일 마감을 포함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비목	신기술	슬라이딩형 철골계단	재래식 거푸집 공법	비고
제작비	1,549,336	1,180,809	-	부가세 미포함
시공비	1,357,559	2,439,628	3,310,290	
총 공사비	2,906,895	3,620,437	3,310,290	
공사비 비교	87.8%	109.3%	100%	

(2) 공사기간

공장생산, 현장에서 중장비 없이 소수인력으로 설치 조립 가능하므로 공기단축 가능

구분	1개층 시공 소요시간(hr)	공중 수	공기 단축률(%)
재래식 거푸집	10	7	-
슬라이딩형 철골계단	3	9	70 %
신기술	2	6	80 %

※ 신기술내용 열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

FRP 단위프레임 구조물을 이용한 수상면 수상부유식 태양광 발전모듈 지지구조물 공법(IFS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신화이앤이
	(주)아이시스이앤씨
	한국동서발전(주)
	(주) 포스코건설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578호
- 보호기간 : 2015.01.20 ~ 2020.01.19
- 기술분류 : 토목>교량>교량 설계 및 구조

1. 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횡방향보가 설치된 수직재와 받침부재를 가로, 세로방향으로 구조재가 연속된 평프레임 상부에 고정하고, 횡방향보와 받침부재 사이에 태양광모듈이 설치되며, 평면프레임 하부에 부력체가 결합된 FRP 단위 프레임구조물을 일체로 인양하여 수상에 설치한 후 수상에서 단위프레임구조물을 서로 힌지 연결하는 수상면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 모듈의 지지구조물 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태양광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기 위한 부유식 구조물 공법으로써 구조재를 습윤 및 염해환경에서 내구성이 우수한 FRP를 활용하고, 평면프레임 구조재를 연속 배치한 단위구조물로 구성하여 단위구조물을 일체로 인양 시공하며, 단위구조물을 수상에서 힌지로 연결함으로써 수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을 최소화 시키고, 볼트로 조립되는 연결재를 활용함으로써 피로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단위구조물은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를 위해 평면프레임에 설치되는 일체형 수직재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재의 구성을 간소화 시켰고, 수직재 상단부에 걸림턱을 구비하여 횡방향보의 시공을 단순거치방식으로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태양광모듈이 단순거치될 수 있도록 태양광모듈 하단부에 받침턱이 구비된 태양광모듈 받침부재를 적용함으로써 시공성을 향상 시켰고, 구조물 하부 국부응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철물과 부력체를 볼트에 의해 조립함으로써 시공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구성한 기술이다.

※ 신기술내용 열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5년 제2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3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 심의일자 : 2015. 3 27.(금)

의안번호	발주청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심의의결)
2015-02-01	경상남도 (도로과)	고성 한내~덕곡간 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사업개요 : L=9.18, B=20m, 839억원	조건부 채택
2015-02-02	경상남도 (도로과)	창원 평암~둔덕간 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사업개요 : L=6.24, B=9.5m, 253억원	조건부 채택
2015-02-03	창원시 (시민안전과)	창원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공사(실시설계) 사업개요 : 펌프장 1개소 등, 414억원	조건부 채택
2015-02-04	거창군 (녹색환경과)	거창 창포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용역비 : 15억원)	조건부 채택
2015-02-05	합천군 (대장경사업소)	합천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용역비 : 8억원)	조건부 채택
2015-02-06	창원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창원 국제사격장 리빌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용역비 : 4억원)	조건부 채택

2015년 제3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심의일자 : 2015. 04. 24.(금)
-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 3건

의안번호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5-03-01	창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일원 · 사업내용 : 우오수관로 신설 L=50.0km, 개량 L=4.5km · 사 업 비 : 293억 원	창녕군 (상하수도 사업소)
2015-03-02	창녕 영산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 위 치 : 창녕군 영산면 동리 일원 · 사업내용 : 우오수관로 신설 L=34.1km, 개량 L=4.4km · 사 업 비 : 217억 원	창녕군 (상하수도 사업소)
2015-03-03	밀양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위 치 :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산외면 희곡리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7.62km(축제 및 호안공 등) · 사 업 비 : 280억 원	밀양시 (안전재난 관리과)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 1건

의안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5-03-04	창원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용역비 : 28억 원)	창원시 (시민안전과)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4626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5년 3월	계		67	79,996	75,534	4,462	5.58%
	공사	토목	27	61,065	57,743	3,322	5.44%
		건축	3	4,433	4,301	132	2.98%
		기타	4	2,312	2,206	106	4.58%
	용역		16	10,428	9,540	888	8.52%
	물품		17	1,758	1,743	15	0.85%

■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나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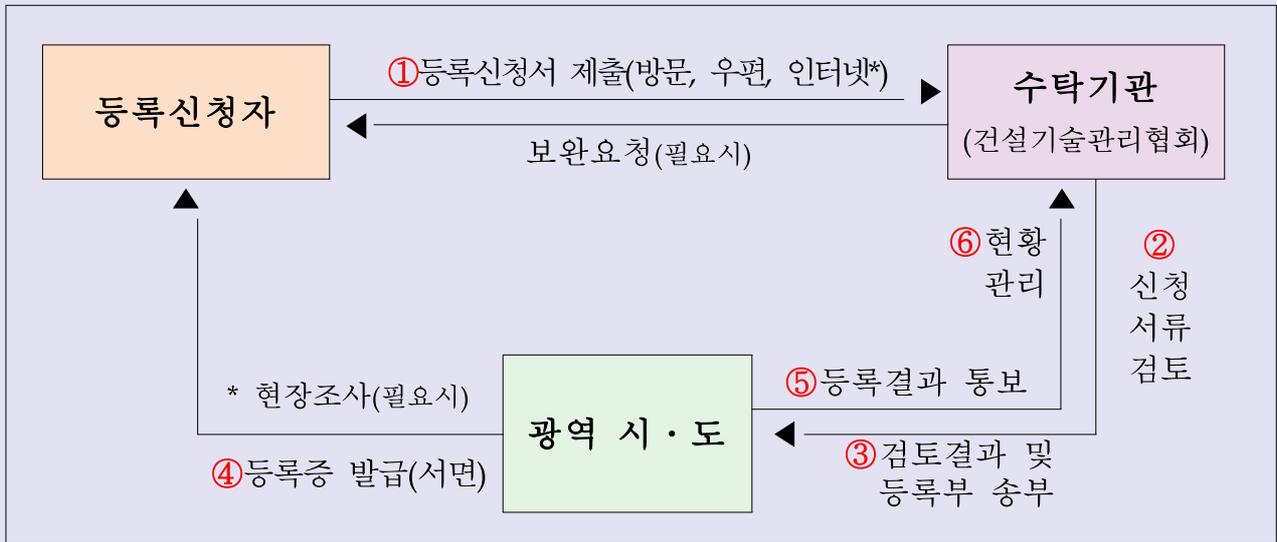
2015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 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 문 제 출)	실 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5회	1.9~1.16	2.1	3.27	3.30~4.8	4.25~5.4	5.22
					3.30~4.2		
	제106회	4.10~4.16	5.10	6.19	6.22~7.1	7.25~8.3	8.21
					6.22~6.25		
	제107회	7.3~7.9	8.1	9.18	9.21~10.02	10.17~10.26	11.13
					9.21~10.26		
기사 (산업기사)	제1회	1.30~2.5	3.8	3.20	3.23~4.1	4.18~5.1	5.8
	제2회	4.24~4.30	5.31	6.12	6.15~6.24	7.11~7.24	7.31
	제3회	7.24~7.30	8.16	8.28	8.31~9.9	10.3~10.16	10.23
	제4회	8.21~8.27	9.19	10.8	10.12~10.21	11.7~11.20	12.18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년 이내(2015. 5. 22.까지) 변경 등록하여야 함.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ccs0673@korea.kr(담당자 최춘수)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